

개리슨 사건과 형사상 명예훼손

G. E. 스티븐스

이 글은 「Journalism Quarterly」(1991년 가을호)에 실린 George E. Stovens (퍼듀대 신문학과 교수)의 「Criminal Libel After Garrison」을 번역한 것이다. …… 편집자 주

커뮤니케이션을 합법적으로 통제하는 가장 오래되고 간접적인 수단은 형사상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이다. 원래 이 법률은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부인들을 모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는데, 중세 영국에서는 폭동의 위협으로부터 군주와 세력자들을 보호하고, 치안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이용되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공중의 소요를 선동하는 문서화된 주장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유죄판결을 받기에 충분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선호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치안방해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상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의 정당성이 약화되었다.」 어느 법원이 실시한 바와 같이, 「그러한 경향은 위협적인 치안방해를 형사소추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보도로 인해 공중에 미치는 영향과는 관계없이, 단지 그것이 개인에 끼친 손해만 중요시한 것이다.」

특정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당사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민사소송을 통해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20세기 중반 무렵에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거의 쓸모없이 되었다. Robert Leflar가 1920~1955년 간에 미국에서의 형사상 명예훼손소송사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91건의 판례가 있었다.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은 정치적인 것이었고, 오직 34건만이 신문사를 상대로 제기되었다. John Stevens와 그의 동료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16~1965년 간에는 148건의 사례가 보도되었는데, 그 중 31건은 정부관리를 비난하여 제기된 것으로, 주 대법원과 연방법원까지 올라간 사건들이었다. 그러나 31건 중 오직 9건만이 신문사와 신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형사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이 빈번하게 정부관리나 공직 인물의 평판에 관련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시대착오적인 범죄는 미 연방대법원이 *Garrison v. Louisiana*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1964년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소멸된 것처럼 보였다. 한 지방 검사가 몇몇 판사들을 비난했다 하여 증오심이나 가해욕구를 갖고서 행한 진실한 주장이나, 혹은 악의를 갖거나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 믿음이 없이 행한 허위의 주장을 처벌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다. 연방대법원은 민사상 명예훼손 사건인 뉴욕 타임즈사 대 설리반 사건에서 주장된 「현실적 악의」 원칙을 판결에 적용했다. 대법원은, 공공의 문제에 관해, 진실은 민형사상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갖고 행해진 허위의 주장은 민형사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발행인에게 더 이상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논제는 적어도 다음의 세가지 이유 때문에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첫째, 1964년 이후에도 *American Digests*의 형사상 명예훼손죄 항목을 살펴보면, 몇 가지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아직도 신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셋째, Garrison 사건 이후에는 어떤 비교연구도 없었다. 이 글에서는 Garrison 사건이 실제로 미국에서 형사상 최후의 명예훼손죄에 관한 것이었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Garrison 사건 이후의 판례들

Garrison 사건 이후의 판례에 대한 연구는 과거 4 반세기에 있어서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언론인들에게는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가정을 확실하게 입증할 것이다. 그 기간에 33 건의 판례가 American Digests의 형사상 명예훼손(Criminal Defamation) 항목에 게재되었고, 그 중 오직 14 건만이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libel)에 관한 것이었다. 그 기간에는 평균 2 년에 1 건의 판결이 있었다. 이는 Leflar 와 Stevens 의 연구결과 매년 거의 평균 3 건의 판례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감소한 것이다. 14 건의 소송사건 중 맨 마지막 판결이 1984 년에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신문사를 상대로 한 가장 최근의 소송은 1978 년에 있었다. 14 건의 소송사건 중 7 건은 북동부지 역에서 제기된 것이고 남부에서는 3 건만이 제기되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가장 많은 3 건이 제기되었고, 뉴저지주에서 2 건, 기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9 개 주에서 각각 1 건이 제기되었다. 6 건의 판례는 정치적인 다툼에 관한 것이었고, 4 건은 개인적인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며, 2 건은 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 노동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1 건이었고, 사진에 관계된 것도 1 건이 있었다. 정부관리가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되었던 사건은 8 건이었으며, 1 건은 특정한 공적인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었다. 집단이나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은 없었다. 어쨌든 14 건의 판례 가운데 3 건만이 검찰측이 승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3 건 중 2 건이 비매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소송이었다. 검찰측이 패소한 가장 일상적인 이유는 적응할 적절한 법률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며, 정부관리나 공적인물이 연루되었을 경우에 요구되는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피고인으로 출석한 사건은 6 건이었다. 그 중 적어도 5 건은 정부관리를 비방하여 제기된 것이었다. 특정 기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항소심에서 지지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러한 판결을 내린 가장 최근의 사건인 State v. Anonymous 사건과 Eberle v. Municipal Court 사건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언론인을 기소하는 데 있어서 검사들이 직면해야 하는 문제들이 어떤 것인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Anonymous 사건은 모 대학 대학신문 편집자가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고, 나머지 손가락을 접은 손을 그린 삽화를 게재하여 제기된 것이다. 가운데 손가락의 끝은 남자 성기의 귀두부를 묘사하는 것이다. 그 삽화에는 특정 대통령후보의 이름이 실려 있었다. 이 신문의 편집자는 특정인에 대한 공격적이고 외설적이며, 그를 매도하는 내용의 보도를 금지하고 있는 코네티컷주 법률에 의해 유죄가 선고되었다.

사실심법원은 그 삽화가 부도덕한 동기에 입각하여 보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법원은, 그 보도가 특정 공무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당국이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심 판결을 번복했다.

Eberle 사건에서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유사한 이유를 들어 주의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관한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한 타블로이드 신문이 공적 인물인 여배우 Angie Dickinson 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했다. 피고인은 죽은 사람을 비난하는 내용을 보도하거나, 살아 있는 사람의 정직성, 성실성, 미덕, 그리고 평판을 해 하거나, 그것에 의하여 공중이 그를 증오하고 시기하고 조롱하게 하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의해 고발되었다.

그 법률하에서는 만약 정당한 동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정한 출판물은 악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직 선한 동기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보도했을 경우에만 정당화되었다.

Garrison 사건 이후 Eberle 사건 담당 법원은 「악의」를 추정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신 피고인측의 「현실적 악의」가 입증되어야만 했다. 더 나아가 「선한 동기나 정당한 목적」에 대한 요구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았다. 법원은 「수정헌법 제 1 조의 법리에 따르면, 공무원 혹은 공적 인물에 관한 공표에 대해 진실한 사실일 경우와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보도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또는 진실 여부에 대해 부주의하게 무시한 채로 행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의 형사상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의 정당화 사유에 해당된다」고 실시했다.

Garrison 사건 이후의 법률

Eberle 사건 담당법원만이 그러한 논리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다른 5 개 주의 형사상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주장한 이유에 근거해 위헌임이 밝혀졌다. Garrison 사건 역시 주 의원들로 하여금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도록 자극했으며, 현재 21 개 주만이 그러한 법률을 갖고 있을 뿐이다. Garrison 사건이 있기 전에는 모든 주에서 명예훼손이 하나의 범죄 행위였다.

공격의 대상이 정부 관리거나 공적 인물인 경우, 21 개 주의 법률 가운데 20 개 주의 법률은 헌법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3 개 주 법원에서는 진실을 하나의 완전한 정당화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범죄의 한 요소로서 허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7 개 주에서는 선한 동기와 정당한 목적을 필요로 하며, 20 개 주 중 어느 한 주도 법률적으로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허위와 현실적 악의의 입증을 모두 요구하고 있는 주는 몬타나주 뿐으로, 그 주에서의 법률은 「정치적인 명예훼손」에만 적용될 뿐이었다. 그 법률은 「특정인이 특정 후보의 인격이나 도덕성에 영향을 주는 허위의 주장이나 비난을 공표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투표기록이나 공공 문제에 관한 특정 후보의 입장을 고의로 잘못 공표하는 것도 불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이 합헌적인가에 대해서는 판결에서 검토된 바 없다. 위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위헌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막연한 것임에 틀림없다.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정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이 후보자의 인격이나 도덕성에

관계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러한 기준이 없는 애매모호한 법률은 경찰, 검사, 판사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허용한다.

비난의 대상이 특정 개인인 경우는 그 상황이 다르다. People v. Heinrich 사건은 피고인이 공공이 볼 수 있는 곳에 특정 부인의 품행을 비난하는 전단을 부착하여 제기된 것이었다. 형사상 명예훼손에 관한 일리노이주 법률(나중에 폐지됨)은, 오직 진실한 사실로서 정당한 목적을 위한 선한 동기로 공표했을 때에만 정당화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사실심법원은 Eberle 사건과 그와 유사한 사건을 인용하여 그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주 대법원은, Garrison 사건에서 비롯된 소송의 판단기준은 오직 명예훼손의 대상이 정부관리나 공적 인물인 경우에만 적합하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정부관리도 공적 인물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주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 1 조와 제 14 조가 의미하는 바에 따르면, 사인을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기소함에 있어서, 진실이 절대적인 정당화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Heinrich 사건을 좀더 확대 해석한다면, 원고가 공적 인물이 아니고 합법적인 공공의 이익에 관한 공표가 아닌 경우에는, 형사상의 명예훼손죄에 관한 유죄판결은 현재의 법률 하에서 지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결 론

어쨌든 오늘날 매스 미디어에 있어서,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대체로 범죄행위로 인정되지 않고있다고 결론을 내려도 무방할 것 같다.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는 대개 공적 인물일 것이고 그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은 합헌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더욱이 검사들은 그러한 법률을 강화하는 것을 꺼려해 왔고 많은 검사들이 그들의 입장을 바꾸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확실히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보도보다 더 사회를 분열시키는 경향이 있는 더욱 심각한 범죄가 많다.」

궁극적으로 Garrison 사건 판결은 언론을 상대로 한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대해 최후의 일격을 가한 판결이다. 사실 최근 들어 연방대법원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완전히 폐지할 의도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어쨌든 형사상의 명예훼손죄는 영미법사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률의 합헌성에 대한 정면 도전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형사상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률은 유죄결정을 내리기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괴롭히거나 협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기자들은 언제 그 법률이 자신에게 적용될지 결코 알 수 없다. 그러한 불명확하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법률은 임의적이고 차별적인 기소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만약 언론에 대한 어떤 위험이 있다면, 아직도 명예훼손을 하나의 범죄로 인정하고 있는 주의 비교적 힘이 없는 언론인 특히 주간신문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이 가장 많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판례에서 나타나고 있다.